

대학원학칙 정보보호대학원 시행세칙

2004.3.1 제정
 2006.9.1 개정
 2007.3.1 개정
 2007.6.1 개정
 2007.9.1 개정
 2010.3.1 개정
 2014.3.1 개정
 2020.3.1. 일부개정
 2020.9.1. 개정
 2021.3.1. 개정
 2021.9.1. 일부개정
 2022.3.1. 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정보보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창의적 정보보호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 3 조 (재학년한) ① 재학년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 이내에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석사과정에 진입할 경우 1학기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학·석사연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석사과정 학생은 2학기, 박사과정 학생은 3학기 동안 매학기 3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 5 조 (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학점취득) ① 석사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지도 8학점과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별도로 취득해야 하며, 전공 24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 25조제2항의 계약학과 교과트랙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지도 8학점과 지도교수지정과목은 별도로 취득하고 전공 30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지도 8학점과 지도교수지정과목은 별도로 취득해야 하며, 전공 30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지도 8학점과 지도교수지정과목은 별도로 취득해야 하며, 전공 48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모든 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중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학과(전공)별 기초공통과목 3과목(9학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정책분야로 학위취득하고자 할 경우 기초공통 과목을 대체 지정할 수 있다. 단, 선수과목 영역의 과목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2.3.1.>

제 7 조 (학점인정) ① 박사과정 입학 전의 초과취득학점 인정은 학기초 20일 이내에 지도교수의 제청에 따라 학과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원 및 본교 일반대학원 정보보안학과 석사과정 졸업자에 한하며, 학점인정 시기는 입학 첫 학기로 제한한다.

②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의 제청과 학과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 또는 외국의 타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 이외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③ 편입한 자의 입학 전의 취득학점 인정은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과주임교수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진입할 경우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하는 대학원 정보보호학과 개설과목 이수학점에 대해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 8 조 (지도교수지정과목) ① 과목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지도교수지정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지정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제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지도교수지정과목 이수자는 지도교수지정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15학점까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

제 9 조 (지도교수 및 박사과정 지도위원회) ① 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 개인별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석사과정

가. 입학과 동시에 대학원장은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나. 입학 후 9학점 이상의 교과목 이수가 끝나면 학생과 지도교수의 의사를 참작하여 대학원장은 해당 지도교수를 포함한 2명의 전공분야 교수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가. 입학과 동시에 대학원장은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나. 입학 후 9학점 이상의 교과목 이수가 끝나면 학생과 지도교수의 의사를 참작하여 대학원장은 해당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전공분야 교수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 10조 (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사유서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의 지도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 제 11조 (학위청구 자격) ① 석사과정에서 전공 24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박사과정에서 전공 30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 25조제2항의 계약학과 석사과정인 자의 학위청구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트랙을 신청한 자는 제1항의 자격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한 경우
 2. 교과트랙을 신청한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추가로 전공 6학점을 이수한 경우 (연구지도 및 선수 학점 제외 총이수 학점 전공 30학점 이상)
- ⑤ 정원의 외국인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에 한해 수월성 목적으로 제25조제2항에 정한 교과트랙을 신청하여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12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6년, 박사학위과정은 10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출산, 휴학, 기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인정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 석박사통합과정은 6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학기 연구내용 및 결과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입학자는 입학년도부터 해당 학위과정 청구연한을 기산하되 제적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단,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입학년도부터 기산한다.
- ③ 학위취득의 수월성 목적에 의하여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의 학위청구연한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4년, 박사학위과정은 8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으로 한다. 단, 대학원위원회에서 군복무, 출산, 휴학 기타 등 그 사유를 인정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료와 동시에 학위청구논문이 심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매학기 학술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3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심사용논문과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 ③ 각 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학사일정에 따른다.
- 제 13조의 2 (재학연한 초과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① 수료 후 논문제출 연한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연장이 허가된 자는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인정받는다.
- ③ 연장이 허가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해당학기 학위청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진입 첫 학기는 재입학금이 부과된다.
- ④ 영구수료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및 허가는 1회에 한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한 2학기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 제 14조 (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 15조 (자격시험의 종류) ①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② 외국어시험은 외부 공인 기관이 시행한 영어시험으로 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제 16조 (종합시험) ① 삭제 <2022.3.1.>
- ②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3과목 내에서 시행한다.
- ③ 삭제 <2022.3.1.>
- ④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5과목 내에서 시행한다. 다만, 본 대학원 및 본교 일반대학원 정보보안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지도교수가 인정한 석사학위 종합

시험 3과목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⑤ 삭제 <2022.3.1.>

⑥ 삭제 <2022.3.1.>

⑦ 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7조 (종합시험 통과기준) 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또는 대체지정 받은 교과목 중에서 3과목을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

②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또는 대체지정받은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전공과목 중에서 2과목을 합격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종합시험 대상 전공과목은 정보보호대학원 학사운영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2.3.1.>

③ 각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신설 2022.3.1.>

제 18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석·박사학위 논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석·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가 행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교수 또는 그 분야의 권위자 중 3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교수 또는 그 분야의 권위자 중 5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③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④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9조 (논문심사) ① 학위 논문의 심사방법은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후 2차로 공개구술시험을 과한다.

② 논문의 최종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되 석사학위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고, 박사학위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 20조 (학위수여 심의) 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의 결과, 계약학과 학위관련 심의 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이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명과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다.

학과명	전공	석사학위	학위종류	박사학위	학위종류
정보보호학과		공학석사(정보보호학)	학술학위	공학박사	학술학위
금융보안학과		공학석사(금융보안)	학술학위 (논문) 전문학위 (교과)		
사이버보안학과		공학석사(정보보호학)			
공공보안정책학과		공학석사(정보보호학)			
디지털포렌식학과		공학석사(디지털포렌식)			
사이버안보학과		공학석사(정보보호학)		공학박사	학술학위
빅데이터응용및보안학과		공학석사(정보보호학)			
융합보안학과		공학석사(정보보호학)		공학박사	학술학위
블록체인학과		공학석사(정보보호학)		공학박사	학술학위

제 21조 (장학금)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결정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22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3조 (연구생)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

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 24조 (연구기간 및 연구과제)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제 25조 (계약학과) ① 본 대학원의 계약학과는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수업연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에는 논문트랙과 교과트랙을 둘 수 있으며 논문트랙을 선택한 경우 학술학위를, 교과트랙을 선택한 경우 전문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료자가 교과트랙을 선택할 경우 수료를 취소하여야 하며 재학을 위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 26조 (수료연구생) ① 2014년 이후 입학생으로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요구하는 학기와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을 수료연구생이라 한다.

② 전 항의 수료연구생에게는 대학원 학칙의 적용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의 수료연구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27조 (영구수료) ①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을 경과하면 영구수료 처리되고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② 영구수료자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제 13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 28조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①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학과주임교수를 포함하여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그 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29조 (준용) 기타 이 세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년도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6조, 제8조, 제16조, 제25조 개정 및 제26조 신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3조, 제7조 및 제16조)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25조 신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자구수정, 제9조 자구조정 및 목
신설, 제12조 자구수정, 제26조 조 신설)

부 칙

1. (시행일)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1항, 제 7조, 제 11조, 제 16조, 제 20조, 제 25조, 제 27조 수정 또는 조항 추가)
2. (적용대상) 제 20조에 의한 수여 학위종별은 2019년 전기 졸업자부터 부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2.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의 2)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2.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학점 축소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2항 내지 제3항, 제 11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 16조, 제18조, 제19조 개정)
2. (경과조치) 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인 학·석사연계과정과 관련한 사항들은 이 개정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개정)
2. (경과조치) 제6조 및 제17조의 기초공통 대체지정 사항은 2022년 3월 1일 현재 재적생을 대상으로 한다.